『지로자동계좌이체』약관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(이하 '자동이체' 라 합니다)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자(이하 '납부자' 라 합니다)와 KB국민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영업일

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

- 1.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
- 2. 토요일
- 3. 근로자의 날

제 3 조 출금

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(이하 '이용기관'이라 합니다) 이 지정하는 납기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출금 대체납부합니다.

②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과실책임

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 **납부자의 과** 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제 5조 부분출금

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,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.

제 6 조 출금 우선순위

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**출금 우선 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<별** 참>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제 7 조 최초 개시일

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 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

제 8 조 자동이체 신청

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- 1.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
- 2.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, <u>전화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udio Response System)</u>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방법

제 9 조 신청서 제출기한

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 (신규,해지,변경)신청시 **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**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.

제 10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

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**예금잔액** 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,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.

제 11 조 정보제공

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**납부자의 계좌정보(거래은행명, 지점명,** 계좌번호, <u>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</u> 등)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,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u>제 12 조 계좌이동서비스</u>

- ① 지로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.
-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③ <u>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Payinfo.or.kr)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</u>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.

제 13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

자동이체 등록계좌가 **1년 이상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**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<u>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</u>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제 14조 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

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<u>제 15 조</u> 약관의 변경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, 전자우편 중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,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납부자는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<u>납부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</u>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제 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

-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(지로)자동계좌이체 및 구 주택은행의 (지로)자동계좌이체는 2002.9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(지로)자동계좌이체 및 구 주택은행의 (지로)자동계좌이체는 2015.10.30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[별첨]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

- 1. 영업개시전 : 정기예금 이자지급
- 2. 영업시간중 (영업시작 직후): 타행자동이체, 대출이자, 신탁, 요구불이체, 선일자 등 영업점 직접처리분
- 3. 영업시간후 :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,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.
 - 1 그룹 : 대출이자, KB 카드대금, 영업점 개별 처리건(APT 관리비 등)
 - 2 그룹 : 대외청구자금(VAN, CMS, GIRO 등)
 - 3 그룹 : 기타 수신 계좌이체, 적립식 예금이체(신탁포함), 요구불간 이체 등
- ※ 납부자자동이체 :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